본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본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2026 - 461호

의 안 명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제외 관행 개선방안**

의 결 일 2026. 11. 9.

주 문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제외 관행 개선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47조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본

<별 지>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제외 관행 개선방안

2026. 11.

국민권익위원회

본

목 차

Ⅰ. 추진 배경 ····· 1

Ⅱ. 현황 ····· 2

Ⅲ. 문제점 ····· 6

1. 법령의 추상성·포괄성으로 인한 처분의 신뢰성 저해 6

2. 전국적 통일성 및 형평성 훼손 우려 ····· 6

3. 기존 권익위 제안의 한계 ····· 7

Ⅳ. 개선방안 ····· 9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제6호 구체화 ····· 9

2. 지침 또는 표준 사례집 제시·배포 ····· 10

Ⅴ. 조치사항 ····· 11

[붙임 1]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2009, 2015, 2019) ····· 12

[붙임 2] 과태료 면제 사례 ····· 15

[붙임 3] 관련 법령 ····· 18

본

Ⅰ. 추진 배경

◈ **추진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7조

○ 「도로교통법」 상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부과 제외 등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이 요구되는 국가사무**로 법에 따라 시장 등 지방정부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임

○ 부과 제외 사유는 범죄 진압, 응급환자 수송 등으로 법에 구체화 되어 있으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별도로 두어 집행 기관에 재량 판단 여지를 부여

○ 그러나 상당한 이유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규정이 **추상적·포괄적**이어서, 지방정부의 과태료 부과 제외심사 시 **해석·적용의 편차 야기**

- 또한, 공무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행위의 경우, **구체적 증빙 없이** 관련기관 공문서만으로 과태료 부과를 제외하는 사례 발생

언론보도

- ○○구, 주정차 위반 과태료 업무 '엉터리': **동일 위반 사유에 대해서도 부과와 면제가 뒤섞여 처리**되는 등 **면제 여부가 담당자 재량에 좌우되는 구조적 허점**('22. 3월 뉴시스1)
- **면제 요청 공문 한 장을 근거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면제해 달라고 요구한 충남 ○○시의원 5명에게 **'부득이한 사유'를 적용해 과태료 면제**('25. 5월 중앙일보)

- 실제로, 우리 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22~'25년 3년간 공무수행 등으로 44,065건의 과태료가 면제되었고, 이 중 **43.5%(19,153건)가 객관적 입증자료 없이 협조 공문서만으로 처리된 것으로 확인**

○ 이에 **관련 법령 규정의 추상성 및 지방정부간 처분 기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 추진

※ 추진경과 : 실태조사(~5월),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9월)

본

Ⅱ. 현황

□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부과제외(면제)

○ **(개념)** 「도로교통법」이 정한 금지 장소·방법을 위반하여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이하 '시장등')가 부과하는 행정질서벌

○ **(부과 근거)**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시장등이 부과

○ **(부과 제외)**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제1호~제5호는 범죄 진압, 응급환자 수송 등 긴급성이 명백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제6호는 포괄적 일반조항으로만 규정**

< 관련 법령 >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각 호 생략)

제160조(과태료)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 (중략) 제32조 (중략) … 를 위반한 사실이 (중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각 호 생략)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다.

1. 차 또는 노면전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하 생략)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징수한다.

3. 제160조 … (중략)… 제3항 (중략)의 **과태료: 시장등**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부득이한 사유) 법 제160조제4항제1호에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당해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본

○ **(사무의 법적 성격)**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는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기관위임**사무로서, 지방정부 고유의 자치사무나 단체위임사무와 구분

○ **(불법주정차 단속·부과·불복 절차)** 기초지방정부 수행 *세종·제주는 광역

1 주정차 위반 단속	▪ 현장단속, CCTV ▪ 필요시 견인조치
⇩	
2 위반사실 통보 (사전통지서 발송)	▪ 위반에 대하여 불복 시 의견진술 제출 (보통 단속일로부터 20일 內 또는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간 內) ▪ 사전통지 기간 내 수납 시 20% 감경
⇩	
3 의견진술심의	▪ **심의(심의위 또는 단속부서)** ▪ **의견제출 수용 → 과태료 미부과**
⇩	
4 과태료 부과	▪ 의견제출 미제출 또는 불수용, 사전통지서 미납 시 부과
⇩	
5 이의신청	▪ 과태료 부과에 불복 시 60일 內
⇩	
6 과태료 재판	▪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 관련 규정 : 도로교통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비송사건절차법

본

□ 최근 면제 실태(권익위 실태조사)

○ **(면제 규모)** 최근 3년간('22. 6. 1. ~ '25. 5. 31.) **공무수행·의정활동*** 관련 주·정차 위반 **과태료 면제 건수는 총 44,065건**(약 18.6억 원)

* 228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통계 확보가 비교적 용이하고 언론에서 문제가 제기된 **공무수행·의정활동 관련** 면제 사례를 중심 표본으로 활용

○ **(입증 실태)** 이 중 객관적 입증자료 없이 **협조 공문서 단독으로 처리된 건수는 19,153건으로 전체의 43.5%**

○ **(지역별 편차)** 증빙자료 첨부율은 경남·경북 99.5%인 반면, 서울은 38.8%에 불과하여 약 60%포인트 이상의 **지역 간 편차 확인**

《 공무수행·의정활동 관련 과태료 면제 현황 》

[출처: 권익위 실태조사('22.6.1.~'25.5.31)., 단위: 건, %]

광역별* (지방정부 수)	과태료 면제	증빙자료 첨부		증빙자료 미첨부	
	건수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제주	57	57	100	0	0.0
전남(22)	401	401	100	0	0.0
세종	847	847	100	0	0.0
광주(5)	159	159	100	0	0.0
경북(22)	222	221	99.5	1	0.5
경남(18)	423	421	99.5	2	0.5
충북(11)	310	303	97.7	7	2.3
인천(10)	699	672	96.1	27	3.9
전북(14)	321	305	95	16	5.0
울산(5)	78	73	93.6	5	6.4
대구(9)	1,390	1,299	93.5	91	6.5
충남(15)	483	436	90.3	47	9.7
경기(31)	8,046	6,970	86.6	1,076	13.4
대전(5)	509	333	65.4	176	34.6
강원(18)	184	116	63	68	37
부산(16)	2,863	1,791	62.6	1,072	37.4
서울(25)	27,073	10,508	38.8	16,565	61.2
계 (228)**	44,065	24,912	56.5	19,153	43.5

* 증빙자료 첨부 비율이 높은 순 ** 광역 2 + 기초 226 = 228

□ 불법 주·정차 관련 기존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 **(권고)** 우리 위원회는 2009년*, 2015년**, 2019년*** 세 차례에 걸쳐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 **구체적인 과태료 면제 기준을 '자치법규(조례 또는 규칙)'에 반영**하도록 지방정부에 권고 (붙임1)

* 2009년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 2015년 <불법주정차 단속 의견진술 처리의 공정성 제고 방안>
*** 2019년 <지방자치단체 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지방의회 조례 제·개정 제안>

○ **(이행 현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제6호에 대한 별도의 과태료 면제 기준을 **자치법규에 규정한 지방정부는 전국 228개 기관 중 143개(62.7%)**

- 미제정 85개 지방정부(37.3%)는 구체적 기준 없이 위 조문 규정만을 인용, **담당자 재량에 의존**하여 처리

《 자치법규 제정 현황 (2015년 권고 이행현황) 》

[출처: 권익위 실태조사('25. 10. 31. 기준., 단위: 건, %]

광역별* (지방정부 수)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		광역별 (지방정부 수)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	
	제정	비율		제정	비율
서울(25)	25	100	울산(5)	3	60
대전(5)	5	100	경북(22)	11	50
제주	1	100	인천(10)	4	40
경기(31)	27	87.1	전북(14)	5	35.7
충남(15)	13	86.7	대구(9)	2	22.2
광주(5)	4	80	충북(11)	2	18.2
경남(18)	14	77.8	부산(16)	0	0.0
강원(18)	13	72.2	세종	0	0.0
전남(22)	14	63.6			
계 (228)**	제정 : 143		비율 : 62.7		

* 관할 시·군·구의 자치법규 제정 비율이 높은 순 ** 광역 2 + 기초 226 = 228

본

Ⅲ. 문제점

1. 법령의 추상성·포괄성으로 인한 처분의 신뢰성 저해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제6호는 상위법인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제1호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는 문언에 수식어만 일부 덧붙여 사실상 **제한 없는 확대 해석의 여지**를 제공

* 반면, 제1호~제5호는 범죄 진압, 응급환자 수송 등 긴급성이 명백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

○ 동일한 상황에도 과태료 부과 유무가 달라질 수 있어 행정의 **예측 가능성 및 대국민 신뢰성 저하 초래**

2. 전국적 통일성 및 형평성 훼손 우려 - 자치법규를 통한 규율의 한계

○ **(형식적)**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제외 등은 「도로교통법」 제161조제3호에 따라 시장등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로서,

- 지방정부의 고유사무(자치사무)나 단체위임사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조례' 제정 대상이 아님**

관련 판례·법령해석

‣ **(판례)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추5036 판결(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 **주정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이 요구되는 국가사무**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는 국가행정기관의 지위에서 하는 기관위임사무
- 지방자치단체는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을 **원칙적으로 조례로 제정할 수 없고**, 주정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위 조례안은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

‣ **(법령해석) 법제처 의견 18-0145(2018. 7. 26., 전라남도 요청)**

-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는 국가사무로서 시장 등에게 법정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따라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도 **규칙으로 정해야 함**

본

○ **(내용적)** 규칙 제정은 가능할지라도 위 대법원 판례에서 확인되듯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이 요구되는 국가사무**를 지방정부의 **자치법규로 제정**할 경우 **제도의 일관성 및 지역간 형평성 저해**

-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라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지역별 여건 고려보다 국가가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

3. 기존 권익위 제안의 한계

○ 권익위는 2009년, 2015년, 2019년에 관련 내용을 지방정부의 **자치법규(조례 또는 규칙)로 구체화**하라고 권고하였으나

- 여전히 85개(37.3%) 지방정부는 자치법규를 마련하지 않았으며, 자치법규를 제정한 **143개(62.7%) 중 9개 기관은 '조례' 형태로 제정**하여 법적 효력에 한계 노출

- 아울러 「도로교통법」상 해당 사무에 관한 세부 기준을 자치법규로 정하도록 위임한 근거가 없어 자치법규를 통한 기준 구체화 권고의 실효성 결여

○ 또한, 과거 권고('15년, '19년)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제6호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로 10개의 예시를 포함하였는데,

- 이 중,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관련기관 공문서'만 **적시**하고 있어 실제로 구체적 증빙자료 없이 관련 공문서 한 장으로 과태료를 제외하고 있는 사례 빈번

  * 최근 3년간('22. 6. 1. ~ '25. 5. 31.) **공무수행·의정활동** 관련 주·정차 위반 **과태료 면제 건수 44,065건**(약 18.6억 원) 중 객관적 입증자료 없이 **협조 공문서 단독으로 처리된 건수는 19,153건으로 전체의 43.5%**

본

< 2015년 권익위가 제시한 '부득이한 사유' 예시>

□ 과태료 면제 기준 구체화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를 아래와 같이 구체화

구 분	주요처리기준	첨부서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1호~5호 생략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삿짐 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 :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보험회사)등
	도난차량 :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	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단속된 차량	음주운전 적발내역서
	금융권의 현금수송 차량의 불법 주차 단속된 경우 : 단속 인근지역에 해당 금융기관(지점) 유무로 판단	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긴급자동차의 경우 : 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 : 선거유세기간 중에만 해당	선관위 발급 차량 부착용 스티커사본 등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 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	**관련기관 공문서**
	차량고장 : 주행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	차량정비·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등
	택배 등 단순물품 승하차 ※ 10분 이내 등 한도시간 지정	운송장 사본

※ 이외 각 자치단체별로 지역상황과 여건에 맞추어 추가 또는 보완하여 운영

○ 구체적인 과태료 면제 기준과 필요서류 등을 자치법규화(조례 또는 규칙)

본

Ⅳ. 개선방안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제6호 구체화 〔경찰청〕

○ 현행 제142조제6호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그 적용 요건이나 입증기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 이에 아래 네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제6호를 구체화하도록 권고

- **(적용요건)** 직무 수행의 긴급성·불가항력적 상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취지를 명시
- **(예시사유)** 긴급 현장 단속·조사, 응급 민원, 현장 조사 등 구체적 유형을 예시로 추가
- **(입증서류)** 협조 공문서만으로 처리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각 목별 객관적 증빙자료(도난신고확인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첨부
- **(보충조항)** 예상 밖의 부득이한 사유까지 원천 배제되는 경직성을 방지하기 위해 개방형 보충 조항 마련

※ 위 네 가지 방향은 시행규칙 구체화의 방향성을 예시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구체적 조문 표현은 경찰청의 입법기술 검토를 통해 확정될 필요

[구체화 사례 1] 병역법 - 병역법 시행령

단계	규범 형식	내용
법률	「병역법」 제64조제1항	“전신기형·질병·심신장애 등으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 매우 포괄적 요건
시행령	「병역법 시행령」 제134조제1항	1호~8호로 유형별 열거(왜소증이 있는 사람, 척추변형이 심한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사지 마비로 운동장애가 심한 사람 등)
시행규칙(부령)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국방부령)	질병·심신장애별로 방대한 별표 (등급판정기준표)를 통해 극도로 세분화

본

[구체화 사례 2] 식품위생법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단계	규범 형식	내용
법률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 취소 등) 제5항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권한은 지방정부의 장에게 전적으로 위임, 세부기준은 총리령에 위임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위반행위 유형별·차수별 정지기간 등)은 시행규칙에 세분화하여 정함

2. 지침 또는 표준 사례집 제시 · 배포

○ 과태료 관련 주무 부처에서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 및 예시**를 지침 또는 표준 사례집을 통해 **제시**

○ 입증서류 및 표준 서식을 함께 제공하여 담당자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운영 도모

[법률에 명시한 '정당한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 지침화한 사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 **'응급의료법 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보건복지부, 2024. 9. 13.)**

「응급의료법」 제6조에 따라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합니다.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래와 같이 응급실 내 폭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진료 거부·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경우

○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는 경우

○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하여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한 경우 (이하 생략)

본

Ⅴ. 조치사항

□ 대상기관 : 경찰청

□ 조치사항

구 분	조치사항	관련기관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ㅇ「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제6호 구체화 (적용요건, 예시사유, 입증서류, 보충조항 등)	경찰청
2 지침 또는 표준 사례집 및 서식 배포	ㅇ「부득이한 사유」 판단 지침 또는 표준 사례집 발간 ㅇ 전국 지방정부·경찰서 배포 및 교육	

※ 정책여건을 고려하여 두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함(필요시 병행 추진도 가능)

□ 조치기한 : 2027. 12월

본

붙 임 1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2009, 2015, 2019)

□ 2009년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Ⅴ 조 치 기 한

구 분	세부개선과제	권고기관	조치기한
1. 과태료 면제 기준구체화	1-1 과태료 면제기준 자치법규 마련	지자체(1)	'10.6월
2.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신설 및 외부위원 참여	2-1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신설	지자체(1)	'10.6월
	2-2 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의무적 참여	지자체(1)	'10.6월
3. 단속기준 현실화 및 효율성제고	3-1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 세분화 방안 마련	지자체(1)	'10.12월
	3-2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의 현실화	지자체(1)	'10.12월
4. 단속표지(스티커) 사용 및 서손처리 명확화	4-1 단속표지(스티커) 사용기준 마련	지자체(1)	'10.6월
	4-2 단속표지(스티커) 서손처리 기준 마련	지자체(1)	'10.6월
5. 지자체 견인대행 체계적 관리 강화	5-1 견인대행 지정요건 강화	지자체(2)	'10.12월
	5-2 견인대행 계약체결, 계약서 작성 등 대행 계약서 요건 강화	지자체(2)	'10.12월
	5-3 견인대행업체 업무평가제 마련	지자체(2)	'10.12월
6.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 국민의 알권리 증진	6-1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 및 과태료면제 기준 안내 강화	지자체(1)	'10.6월
	6-2 공용주차장 등 주차가능공간 안내도우미제 실시	지자체(1)	'10.6월
	6-3 과태료 부과 원스톱서비스 시행	지자체(1)	'10.12월

※ 지자체(1) : 전국 232개 지자체(기초자치단체 230개소, 제주도 행정시 2개소)
지자체(2) : 견인대행 지자체

□ 2015년 <불법주정차 단속 의견진술 처리의 공정성 제고 방안>

□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의 객관성 확보 등

○ 의견진술에 대한 면제결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과반 이상 포함**

<참고>_의견진술심의위원회 운영 우수사례
★ 서울특별시 강북구는 불법주·정차 면제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을 제정, 의견진술심의위원회는 공무원 1명, 외부위원 9명으로 구성하여 공정성을 확보하였고 최근 4년간 의견진술 5,373건 중 면제건수는 1,827건으로 면제율은 34%

- 내부공무원으로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을 구성하는 경우, 감사담당 부서장을 포함하거나 관내 교통경찰관을 포함
- 도서지역 등 주·정차단속, 의견진술 등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구성 제외 또는 구성비율 조정하여 운영

○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은 과태료 면제기준을 포함하여 자치법규로 제정

Ⅳ 조치사항

□ 권고 대상기관 :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 관련법령 : 각 지자체별 자치법규 (조례 또는 규칙)

구 분	세부 개선과제	조치기한
불법주정차 과태료 면제 기준 구체화	□ 과태료 면제 기준 구체화하여 자치법규로 제정 또는 추가 □ 의견진술 검토 내실화	'16.12월
객관적 심의기구 설치 등 내·외부 검증 강화	□ 불법주정차 면제에 대한 정기 감사 실시 □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의 객관성 확보 등	'16.12월

- 11 -

Ⅳ. 협조 요청사항

□ 각 지방의회는 권익위에서 제안하는 **조례 제·개정 사안(10건)**에 대해 기관별 여건을 고려하여 소관 조례에 조속히 반영

< 과제별 소관 상임위(예시) >

제안 과제	소관 상임위
1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자문변호사 조례」	안전행정 위원회
2 **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 개선 방안** -「체육시설 조례」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3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체계 개선** -「공공조형물 건립·관리 등에 관한 조례」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4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지방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의회운영 위원회
5 **불법주정차 단속 의견진술 처리의 공정성 제고**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건설교통 위원회
6 **예산을 이용한 과도한 장기근속·퇴직 기념금품 제공 관행 개선** -「포상 조례」,「후생복지 조례」	안전행정 위원회
7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사후관리 투명성 제고** -「전통시장 관련 조례」	기획재정 위원회
8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이용료 장애인·다자녀 감면** -「자연휴양림 관련 조례」	농정해양 위원회
9 **소방시설 불법행위 등 신고에 대한 조례상 적격범위 확대**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안전행정 위원회
10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체계 개선** -「하수도 사용 조례」	도시환경 위원회

붙 임 2 과태료 면제 사례

사례1 (협조 요청 공문에 붙임으로 첨부된 증빙자료)

붙임 1. 보고전(정0원 고독사) 1부.
2. 시체 검안서(정0원) 1부.
3. 출장 결과 보고서 1부. 끝.

현장방문사진





내용

집주인 김 남이 세입자 정 원이 연락이 안되고 집안에서 냄새가 난다고 읍사무소로 연락, 복지팀 현장 방문, 사망으로 추측 되어 경찰에 신고, 14:10분경 경찰이 집 내부 진입하여 사망 확인

붙임 출장결과보고서 1부. 끝.

출 장 결 과 보 고 서

결재	주무관	물관리팀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전결 2024. 10. 22.		
협조					

부 서	상하수도사업소	작성자	직 성명	지방공29급 진	일 자	2024. 10. 21.
제 목	지방상수도 시설물 긴급 복구 출장결과 보고(화)					

지방상수도 시설물 유지·보수차 출장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아 래 ◇

1. 일 자 : 2024. 10. 16.(수)
2. 출장자 : 외
3. 출장지 : 주무관 진

☐ 지방상수도 유지보수 내역 총괄 (단위 : 건)

상수도관 파열 보수 (손괴, 국민신문고, 기타)		변류(제수밸브) 보수		불개 보수		소방용수 보수	
누 계	금 일	누 계	금 일	누 계	금 일	누 계	금 일
55(1)	1	6	0	20	0	3	0

☐ 보수현황

유 형	위 치	보수 지재 투입 및 내역	보수업체
관파열		단관 (D80),소켓(D80), 굴재, 굴착기 등	

☐ 신고자

성명	주소	연락처	신고내용
해	당	없	음

4. 보고자 의견

붙임 위치도 및 사진대지 1부. 끝.

2024. 10. 21.

붙임 작업 사진대지 1부 끝.

사 진 대 지

위 치	도로상
내 용	관파열보수공사(D80)









본

사례 2 협조 요청 공문서만으로 면제요청

[ ] [ ] 시 [ ]

수신 [ ]구청장(주차관리과장)

(경유)

제목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면제요청**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관용차량이 귀 구 관내에서 공무수행 중 주정차 위반에 단속되어 아래와 같이 과태료 부과 면제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과태료 부과 현황

구 분	위반일시	장 소	차량번호(차종)
********	********** *****	*********	******* ********

나. 면제근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부득이한 사유)

-

****

****

붙임: 주정차 위반 고지서 1부. 끝.

[ ] 시 장

주무관 [ ] 시설안전관리팀장 [ ] 중대재해예방과장 [ ]

협조자

시행 중대재해예방과-[ ]5 (2026. 4. 23.) 접수 ( )

우 04524 [ ] / http://www.[ ].go.kr

전화 [ ] /전송 [ ] / [ ].go.kr / 부분공개(6)

사례 3 협조 요청 공문서만으로 면제요청

[ ]

[ ] [ ]구 의 회 [ ]

수신 [ ]구청장(주차교통과장)

(경유)

제목 **주정차 위반 과태료 관련 협조 요청**

[ ]구의회 의정활동 지원업무 중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되어 면제 협조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면제 협조 요청내역

연번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활동사항
1	********	********** ** *****	**********	********** **	********** *

붙임 : 1. 사전통지서 1부. 끝.

[ ]구의회의장

주무관 [ ] 의정팀장 [ ] 의회사무국장 04/21 [ ]

협조자

시행 의회사무국-3401 (2026. 4. 21.) 접수 ( )

우 [ ]구의회 / https://www.[ ].go.kr

전화 [ ] /전송 [ ] / [ ].go.kr / 부분공개(5)

본

붙 임 3 관련 법령

1.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3.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본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제160조(과태료)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6조제1항·제2항(통행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제1항·제3항·제5항, 제14조제2항·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3항, 제21조제1항·제3항, 제22조, 제23조, 제25조제1항·제2항·제5항, 제25조의2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제7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제4항,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10호·제11호·제11호의2, 제50조제3항, 제60조제1항·제2항, 제62조 또는 제68조제3항제5호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 또는 적재량 측정자료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

1. **차 또는 노면전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제156조에 따라 처벌된 경우(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4. 자동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징수한다.

1. 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제53조제7항에 따른 안전운행기록 제출, 제

본

53조의3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제53조의3제3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과태료: 시·도경찰청장

2. 제160조제1항(제52조제1항·제3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2항(제49조제1항제1호·제3호, 제50조제1항·제3항, 제52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53조의3제1항·제3항 및 제56조의3제1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3항(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과태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3. 제160조제2항제4호의3·제4호의4·제4호의5·제10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과태료: **시장등**
4. 제160조제2항제4호의3·제4호의4·제4호의5의 과태료: 교육감

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① 시·도경찰청장, 시장등 또는 교육감은 법 제160조 및 법 제16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단속대장과 과태료 부과대상자 명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속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운전자나 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이하 “고용주등”이라 한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주차·정차위반 차에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를 붙인 후 해당 차를 촬영하거나 무인교통단속용 장비로 주차·정차위반 차를 촬영한 사진증거 등의 증거자료를 갖추어 부과하여야 하고, 증거자료는 관련 번호를 부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법 제16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에 따라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법 제5조, 제17조제3항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본

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른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비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감경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

1. 과태료 체납률
2. 위반행위의 종류, 내용 및 정도
3. 범칙금과의 형평성

⑥ 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는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태료를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⑦ 시장등은 과태료의 납부 고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지방세 중 자동차세의 납부고지서와 함께 미납과태료(가산금을 포함한다)의 납부를 고지할 수 있다.

⑧ 시·도경찰청장 또는 시장등은 차의 등록원부가 있는 지역 또는 노면전차 운영자의 소재지(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있는 지역(이하 “차적지”라 한다)이 다른 관할구역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적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시장등에게 과태료 징수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태로 징수를 의뢰한 시장등은 차적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징수된 과태료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징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8조제4항 본문 관련)

위반행위 및 행위자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과태료 금액
6. 법 제32조(제6호는 제외한다)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제160조제3항	1) 승합자동차등: 5만원(6만원) 2) 승용자동차등: 4만원(5만원)
6의2. 법 제32조제6호를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제160조제3항	
가.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 정차 또는 주차를 한 경우		1) 승합자동차등: 9만원(10만원) 2) 승용자동차등: 8만원(9만원)
나. 가목 외의 곳에 정차 또는 주차를 한 경우		1) 승합자동차등: 5만원(6만원) 2) 승용자동차등: 4만원(5만원)

본

[별표 7]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제88조제4항 단서 관련)

위반행위 및 행위자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차량 종류별 과태료 금액
3.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제160조제3항	
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		1) 승합자동차등: 13만원(14만원) 2) 승용자동차등: 12만원(13만원)
나.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		1) 승합자동차등: 9만원(10만원) 2) 승용자동차등: 8만원(9만원)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부득이한 사유) 법 제160조제4항제1호에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당해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

본

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제21조(법원에의 통보)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행정청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인 가운데 1인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

5. 「병역법」

제64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준비역으로서 제1호(신체등급이 6급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을 면제할 수 있고,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신체등급이 5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라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사람 중 19세 이전에 장애상태가 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조정되거나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1.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2.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
3.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와 출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1. 25.>

6. 「병역법 시행령」

제134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① 법 제64조제1항제1호의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발병한 지 2년 이상이 지난 난치의 정신질환이나 지적장애로 인하여 보호자나 감시자가 있어야 하는 사람
2. 왜소증이 있는 사람, 척추변형이 심한 사람, 코가 없는 사람 또는 양쪽 귀가 없는 사람
3.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또는 앞을 못 보는 사람(한쪽 눈이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사지(四肢)의 마비나 단축으로 운동장애가 심한 사람
5. 보건소에 한센병 환자 또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으로 등록된 사람
6. 손가락이나 발가락 중 3개 이상이 없는 사람
7. 악성 혈액질환[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악성 림프종 또는 관해(寬解) 후 5년 이상 경과한 혈액암으로 한정한다],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애디슨씨병 또는 랑게르한스조직구증(전신적 항암치료로 치료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확진된

본

사람

8.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기준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병역판정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법 제6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병역면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일 전날까지 병역면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병역면제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8호 본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출원 없이 지방병무청장이 그 등록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병역면제 사유를 확인한 경우와 제4항에 따라 등록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에 의하여 병역을 면제하거나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⑥ 삭제

⑦ 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려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일 전날까지 전시근로역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지방병무청장은 제7항에 따라 전시근로역 편입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본

7.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부령)

제11조(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①신체검사대상자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는 1급·2급·3급·4급·5급·6급·7급으로 구분하되, 그 평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2. 1.>

② 담당 병역판정전담의사, 담당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대하여 임상적인 기능·장애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 3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별표 3에 열거되지 않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대해서는 별표 3의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

제20조(병역처분변경 등의 신체검사) ① 법 제61조제2항, 제65조, 영 제135조 및 제135조의2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을 하거나 법 제77조의2에 따라 확인신체검사를 하기 위하여 행하는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제2장을 준용한다. 다만, 법 제65조제8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을 원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장·체중 측정은 하지 않고, 제10조에 따른 신체등급도 판정하지 않는다. <개정 2009. 1. 28., 2015. 10. 19., 2018. 2. 1., 2021. 2. 1.>

② 담당 병역판정전담의사, 담당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은 병역처분의 변경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병역처분변경원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 내에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수술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수술 전의 질병상태 및 수술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영상자료, 의무기록지, 진단서 또는 자체 의료장치를 이용한 검사 자료를 확인하고 신체등급을 판정한다. <신설 2008. 2. 14., 2015. 1. 21., 2016. 11. 29.>

제21조(전시특례) 국방부장관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입영판정검사·입영신체검사·지원병신체검사 및 병역처분변경 등 신체검사에 있어 별표 3 중 전시평가기준에 의하여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을 할 수 있다. <개정 1994. 1. 29., 2016. 11. 29., 2018. 9. 17., 2021. 7. 29.>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약칭: 병역신체검사규칙)
[시행 2024. 2. 1.] [국방부령 제1139호, 2024. 2. 1., 일부개정]
[별표 3]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제11조·제20조 및 제21조 관련)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3] <개정 2024. 2. 1.>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제11조·제20조 및 제21조 관련)

비고: 평가기준란 중 평시란은 제2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 입영판정검사, 입영신체검사, 지원병신체검사 및 병역처분변경 등 신체검사의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을 말하고, 같은 란 중 전시란은 제21조에 따라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서 국방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을 말한다.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평시	전시
내과	1. 내과 관찰 결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괄호 안에 병명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7	7
	2. 급성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감염병을 말한다)		
	가. 현증	7	7
	나.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1	1
	3. 간디스토마(대변검사로 확진된 경우를 말한다)		
	가. 전신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2	1
	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4. 폐디스토마(객담검사로 확진된 경우를 말한다)		
	가. 가벼운 자각증상만 있는 경우	2	1
	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5. 장내기생충증 및 그 밖의 기생충증		
	가. 군복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	1	1
	나. 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7	7
	6. 자가면역질환(전신성인 경우를 말한다)		
	가. 가역적인 기능손상이 있는 경우	5	5
	나. 비가역적인 기능손상이 있는 경우	6	6
	다. 류마티스 관절염(상지·하지 또는 그 밖의 관절)		

-중략-

본

8.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중략-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2015. 3. 27.>

9.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개정 2026. 9. 1.>

행정처분 기준

(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1.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가. 영업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우

나. 한 품목 또는 품목류(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같은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우

본

-중략-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법 제4조를 위반한 경우 가. 썩거나 상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법 제72조 및 법 제75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중략-

본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6년 11월 9일

위 원 한 삼 석

위 원 조 소 영

위 원 이 명 순

위 원 권 석 원

위 원 최 명 규

위 원 이 흥 주

위 원 김 바 올

위 원 신 상 욱

위 원 허 재 우

위 원 김 남 주

위 원 고 춘 순

위 원 민 병 로

위 원 김 매 경

위 원 장 유 식

사본

정본입니다.

2026. 11. 9.

국 민 권 익 위 원 회